

● 제29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홍성룡 의원 외 16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0. 8. 12.
- 다. 회부일 : 2020. 8. 21.
- 라. 의안번호 : 18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일본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 국내 일각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음.

-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민족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함께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한때나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그에 저항한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과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역사적 다짐을 담고 있음.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대의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있지만, 1940년대 말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활동이 친일 세력의 방해와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좌절되고 이후 반공과 통일, 경제 발전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상정되면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했음.

-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는 민간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요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 등으로 나타났음.
- 국회 차원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년)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이 이뤄졌고,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2019년),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2020년)가 제정되었음.
- 서울시 또한 일제강점기 잔재인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조선 통감부 관저터에 남아 있던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동상의 흔적을 이용해 ‘거꾸로 세운 동상’을 설치했고, 최근에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건축물 3천 건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음.
-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일제 시대의 강제 징용, 위안부 동원 등의 범죄 행위를 변호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¹⁾ 일본은 자국 교과서를 통해 식민 지배 정당화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는 등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1) “한국 내 ‘新친일파’…日 우익과 ‘관박이’”(노컷뉴스, 2019-08-13),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위안부, 폐업 권리 보유…성노예 아냐””(경향신문, 2019-08-16), “‘친일 발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이르면 7월께 이뤄질 듯”(한겨레, 2020-04-21).

- 이에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역사적, 민족적 정당성을 갖는 일로 판단됨.
-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관 주도의 일방적 캠페인과 의식개혁 운동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일제잔재 청산이 의도와 달리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학문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결의안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 상징 조형물 등의 청산을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주어진 기간과 인원을 고려할 때, 서울시 관내의 수많은 지명, 명칭, 조형물에 대해 어떻게 일본식 내지 일본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목표, 기준, 방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²⁾
- 본 결의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 의견조회 결과, 여타 상임위원회는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특별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므로

2) 2003년에 실시한 '서울시 옛지명 되찾기 사업'은 서울시 관내 일제 잔재 지명으로 71곳을 확인했으나, 이중 4곳만 명칭을 변경하였음("윤호중 의원 "민관 협력하여 일제 잔재 지명 개선작업 시작해야"(대한뉴스, 2019-10-17)). 다른 한편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지명의 3분의 1, 종로 지명의 3분의 2가 일본식 이름이라고 함("서울 지명 3분의 1, 종로 지명 3분의 2가 일본식 이름"(국민일보, 2015-08-03)).

시민들에게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그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이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함(참고자료 1).

4 종합의견

- 반민특위 활동이 좌절된 이후 민주화와 함께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 활동이 이뤄져왔음에도 최근년에 들어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식민지 시대의 범죄를 변호하는 행태가 출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의회가 선도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에 바탕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친일 행위를 근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는 것은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관 주도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와 민간단체와 폭넓게 협력하며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경제·학문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시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 동 결의안은 친일반민족행위와 역사적 지명 및 명칭 등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청산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 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는 당초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는 국가 사무로 되어 있으며,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는 업무로 반민족행위청산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임.